



철도사고조사 중간보고서

부산교통공사 2호선 호포기지 제2620호 전동열차(37편성, 6량) 열차 탈선 2017년 11월 2일(목) 06시 42분경



2018. 11. .



항공 • 철도사고조사위원회

부산교통공사 2호선 호포기지 전동열차 탈선사고

○ 운영기관: 부산교통공사

○ 운행노선: 2호선

○ 발생장소: 호포기지 구내(504A 선로전환기 부근).

○ 사고열차: 제2620호 전동열차[37편성, 6량]

○ 사고유형: 열차 탈선

○ 발생일시: 2017년 11월 2일(목) 06시 42분경



[그림1] 호포기지 구내 사고 현장 사진

개요

2017년 11월 2일(목) 06시 42분경, 부산교통공사 2호선 호포기지 유치 3번 선에서 출고하던 제2620호 전동열차가 62L 정지신호를 지나 부정출발방지장 치¹⁾가 동작 하였으나 기관사가 임의로 복귀하고 계속 운전하여 504A호 선로전환기의 첨단부를 지나 정차하였고, 기지관제원이 선로전환기 상태 확인없이 기관사에게 정지위치만 확인하고 퇴행운전²⁾을 지시하여 유치 3번선으로 되돌아가면서 맨 앞차 좌우 차륜이 선로전환기 첨단부에서 탈선되었다.



[그림2] 사고개소(504A호 선로전환기 부근)

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, 전동열차의 차륜 2개가 탈선되었고 일부열차의 출고가 지연되었다.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
¹⁾ 차량기지 등 비자동화구간에서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

²⁾ 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 하는 것

1. 사실정보

1.1 사고경위

2017년 11월 2일(목) 06시 36분경, 제2620호 36편성 6량 전동열차(이하 '사고열차'라 한다.) 기관사는 호포기지 유치 3번선(SE3)에서 출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 기지관제원의 지시에 따라 111L출발 신호기³⁾ 진행을 확인하고출발하였다.

06시 37분경 기관사는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있는 62L 신호기를 확인하지 못 하고 지나쳤으며, 사고열차는 부정출발방지장치에 의해 자동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하였다.

약 12초 후 06시 37분경 기관사는 인접선 제2027열차4)의 운행 선로에 있는 33L 진행신호를 본인이 운행할 선로의 신호로 착각하고 비상제동 해제용 버턴을 임의로 눌러 비상제동을 해제하고, 야드모드5)로 15km/h이하로 진행하던 중 504호 선로전환기를 약 5km/h의 속도로 통과하며 "쿵, 쿵"소리와함께 사고열차는 정차하였으나 이를 기지관제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.

06시 38분경 기지관제원은 대형표시반의 504A 궤도에 불법점유를 발견하고 열차무선으로 인접열차 기관사를 호출하여 정차 지시 후 운행 위치를 파악한 뒤, 사고열차 기관사에게 정차 지시 후 신호를 잘못 보고 운행 한 것을 알려주고 정차 위치가 출고선에 못 미쳐 정차했는지를 확인하였다.

06시 39분경 기지관제원은 사고열차를 유치 3번선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 진로를 설정하고 열차무선으로 기관사에게 현 위치에서 반대 운전실로 빨리 바꾸도록 지시하며, 직접 선로에 내려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차륜이 선로전환기를 할출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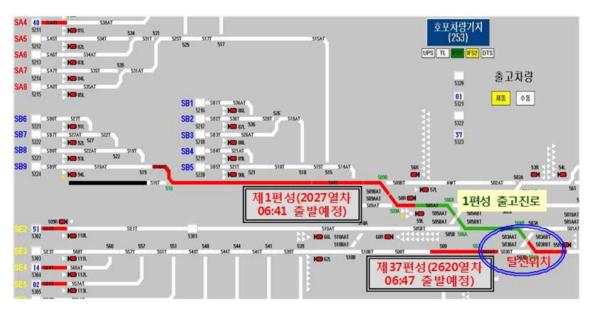
³⁾ 진행 신호가 현시되면 유치 3번선(SE3)에서 62L 신호기 앞까지 열차의 운행이 허용되는 신호기

⁴⁾ 호포역에서 사고열차 보다 6분 먼저 출발하는 선행열차

⁵⁾ 차량기지용 운전모드로 25km/h 이하로 운전이 가능

06시 40분경 기지관제원은 사고열차 기관사가 반대 운전실 교환한 뒤 열차무선으로만 '출고선까지 운행하지 않은 것, 선로전환기를 할출 하지 않은 것'을 확인하고 유치 3번선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하였다.

06시 42분경 사고열차는 '타코미터 에러, 공기스프링 압력 고장, A/S 터짐 고장, 주공기통 압력 저하' 차량 고장 메시지를 표출하며 6호차 1위 대차 1 차축 좌우 차륜 2개가 왼쪽으로 탈선한 상태에서 18m 이동하여 정차하였다.



[그림3] 호포 기지 탈선 개요도

1.2 피해상황

1.2.1 인명피해

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1.2.2 물적피해

이번 사고로 선로전환기 텅레일 1개 파손 및 체결구의 손상과 전동차의 픽업코일 2개와 TC카용 주차제동장치 1개가 파손되어 약 10,350천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.

2. 조사 진행현황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
3. 사고원인 및 안전권고

이 사고조사와 관련된 원인 및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